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9명(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39명),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개교에 따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교장 1명, 영양교사 1명, 보건교사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4명) 및 친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의 총계 “26,580”을 “26,629”로 하며, 교육공무원 계 “20,423”을 “20,465”로 하고, 대학 계 “18,696”을 “18,735”로 하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791”을 “15,830”으로 하고, 특수학교 계 “377”을 “378”로 하며, 교장 “5”를 “6”으로 하고,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4”를 “86”으로 하며, 보건교사 “40”을 “41”로, 영양교사 “29”를 “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30”을 “6,1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48”을 “6,055”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

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별표 2]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대통령령 제0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26,628
교육공무원 계	20,465
대학 계	18,735
총장	37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830
조교	2,868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801
교장	17
교감	17
교사	76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428
교장	16
교감	16
교사	396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9
원장	1
원감	3
교사	15
특수학교 계	378
교장	6

교감	10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 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362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6
보건교사	41
영양교사	30
사서교사	12
전문상담교사	3
교육전문직 계	18
교육연구관	7
교육연구사	11
별정직 계	27
고위공무원단	18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9
일반직 계	6,136
3급 또는 4급 이하	6,054
전문경력관	82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580</u>	<u>26,629</u>	+49
교육공무원 계	<u>20,423</u>	<u>20,465</u>	+42
대학 계	<u>18,696</u>	<u>18,735</u>	+39
·	·	·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u>15,791</u>	<u>15,830</u>	+39
·	·	·	
·	·	·	
특수학교 계	<u>377</u>	<u>378</u>	+1
교장	<u>5</u>	<u>6</u>	+1
·	·	·	
·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u>84</u>	<u>86</u>	+2
보건교사	<u>40</u>	<u>41</u>	+1
영양교사	<u>29</u>	<u>30</u>	+1
·	·	·	
·	·	·	
일반직 계	<u>6,130</u>	<u>6,137</u>	+7
3급 또는 4급 이하	<u>6,048</u>	<u>6,055</u>	+7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08